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·개편하는 내용의 「정부조직법」(법률 제21065호, '25.10.1. 공포·시행)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,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)	제89조(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)
사법경찰관은 혼획·좌초 또는	-----
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「야생	-----
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	-----
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	-----
멸종위기종 또는 「해양생태계	-----
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-----
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	-----
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	-----
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<u>환경부</u>	----- <u>기후에</u>
<u>장관</u>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	<u>너지환경부장관</u> -----
즉시 통보해야 한다.	-----.